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개정(안) 안내

□ 개정 사유 : 상속·증여세 연부연납시 물납에 따른 물납가액과 매각액 차이로 국세손실 발생. 이에 따라 연부연납시 현금납부 원칙 실현

□ 개정안 요약

- 상속·증여세 연부연납의 현금납부/물납허용 재산범위에서 상장주식 제외

□ 개정 내용

구분	현행	개정안	비고
연부연납 기간중 분납	<input type="checkbox"/>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○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 허용 *물납대상 : 유가증권, 부동산	○ (삭제) ⇒ 현금납부 원칙(물납 불가)	시행령 제70조 2항
물납허용 재산범위	<input type="checkbox"/> 물납재산의 범위 ○ 국채 및 공채 ○ 유가증권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*단, 다른 상속·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법률로 처분이 제한된 경우 ○ 비상장 주식 등 *상속의 경우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	○ (현행과 동일) ○ (삭제) ⇒ 상장주식 물납 불가(처분후 현금 납부) *단, 법률로 처분 제한된 경우 물납가능 ○ (현행과 동일)	시행령 제74조 2항

※참고자료

【연부연납제】

- 제도개요 : 납세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세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내는 제도
- 적용대상 :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
- 연부연납기간 : 최대 3년 거치 12년간 연납
-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(물납가능)
 - 일 반 : 5년간 연납
 - 가업상속 : 총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(주식) 비율이
 - 50% 이상 시 3년 거치 후 12년간 연납
 - 50% 미만 시 2년 거치 후 5년간 연납

【물납제】

- 제도개요 :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세금납부
- 적용대상 :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비율이 50% 초과
 *비상장주식 물납 대상에서 제외('08.1.1부터)
 다만, 상속에 한하여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

※ 위 시행령개정(안)의 세부내용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-13호 참고